

6. 建設技術管理法施行令中 改正令

대통령령 제15,441호 1997. 7. 21

주요 골자

- 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자재의 표준화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등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설표준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함(영 제39조의 2 및 제39조의 3).
- 나. 주요 대형공사에 국제수준의 품질관리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공항·댐·고속도로·항만·철도 등의 건설공사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영 제41조제1항).
- 다. 계획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을 건설공사 및 건설자재의 품질을 시험·검사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 및 건설자재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도모함(영 제49조).
- 라. 전면책임감리의 내실을 기하고 감리인력의 부족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공중에 관계없이 실시하던 전면책임감리를 앞으로는 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중 공항·댐·고속도로·항만·철도 등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조정함(영 제50조).

개정 이유

공공건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및 자재의 표준화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주요 건설공사의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건설공사 및 건설자재의 품질을 시험·검사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을 전문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면책임감리의 내실을 기하고 감리인력의 부족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면책임감리를 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중 공항·댐·고속도로·항만·철도 등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함.

주요 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타 건설기술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 아목에서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제3조의 2의 제목 "(설계감리대상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의 범위)"를 "(발주청의 범위)"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조 중 "법 제2조 제5호"를 "법 제2조 제8호"로 한다.

제4조의 2중 "법 제2조 제6호"를 "법 제2조 제9호"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10년"을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5년”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기본계획”을 “법 제3조 제1항의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으로, “기본계획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을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여”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

술인력”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으로 하며,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별표 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제63조 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1.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1항 제1호	100만원 이하
2.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자가 교육을 받은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1항 제1호	100만원 이하
3. 법 제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200만원 이하
4. 법 제2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설계등 용역을 수주한 자	법 제43조 제1항 제3호	100만원 이하
5. 법 제2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자 가. 등록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인 때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0일초과시마다	법 제43조 제1항 제4호	50만원이하 10만원이하
6. 법 제2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자	법 제43조 제1항 제4호	200만원 이하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7. 법 제28조의 5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직을 한 자	법 제43조 제1항 제5호	100만원이하
8.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용역을 수주한 자	법 제43조 제1항 제6호	100만원 이하
9.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1항 제7호	200만원이하
10. 법 제36조의 18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한 자	법 제43조 제1항 제8호	100만원이하
11. 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43조 제1항 제9호	150만원이하
12. 법 제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법 제43조 제2항	30만원이하

주택회보